

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대통령령 제 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2.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
3. 법 제108조제1항제4호, 제8호, 제9호,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4.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<u>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</u> 2. <u>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</u> 3. <u>법 제108조제1항제4호, 제8호, 제9호,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</u> 4. <u>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10 - 1327